

제10장 정부조달

제10.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건설서비스란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CPC) 중분류 51에 근거하여, 그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토목 또는 건축 공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면으로 또는 **서면**이란 독해 가능하고, 모사 가능하며, 사후에 통지될 수 있고 그리고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모든 문자 또는 숫자로 된 표현을 말한다.

제한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자신이 선택한 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들과 접촉하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유자격자 명부란 조달기관이 그 명부에 등재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결정하여 그 조달기관이 두 번 이상 활용하려는 공급자들의 명부를 말한다.

조달예정공고란 조달기관이 관심 있는 공급자에게 참가신청서, 입찰서 또는 둘 모두를 제출할 것을 청하기 위하여 공표하는 공고를 말한다.

대응구매란 국산 재료의 사용, 기술 면허, 투자, 대응 무역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요건과 같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는 모든 조건 또는 약속을 말한다.

공개입찰이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조달기관이란 부속서 10-가, 10-나 및 10-다에 열거된 정부조달을 규율하는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적격 공급자란 조달기관이 참가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인정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선택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적격 공급자들에 한정하여 입찰서 제출을 청하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서비스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공급자란 조달기관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 또는인의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규격이란 다음의 입찰 요건을 말한다.

가. 다음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

- 1)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용적을 포함한 조달될 상품 또는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한 과정 및 방법, 또는
- 2) 조달될 서비스 또는 적용 가능한 행정 규정을 포함한 그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과정 또는 방법, 또는

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다루는 것

제10.2조

목적

당사국들은 법, 규정 및 절차의 투명성을 증진하며 당사국들 간 협력을 발전시키는, 무

역관계에서의 정부조달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10.3조

적용범위

이 장의 적용

1. 이 장은 한국, 바레인왕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은 한편으로는 한국을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레인왕국 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말한다.
2. 이 장은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3.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조달이란 다음의 정부조달을 말한다.
 - 가. 구매, 매입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않는 임차 또는 리스를 포함한 모든 계약 수단에 의한 것
 - 나. 제6항에 따라 추정된 조달금액이 조달예정공고의 공표 당시 부속서 10-가 또는 부속서 10-나 또는 부속서 10-다의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관련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가액의 것
 - 다. 조달기관에 의한 것, 그리고
 - 라. 이 협정의 적용범위로부터 달리 배제되지 않는 것

준수

4.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의 수행에서 자국의 조달기관이 이 장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조달 기관도 이 장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달의 어떠한 단계에서든

조달을 준비 또는 설계하거나 달리 구성하거나 별개의 조달로 나누지 않으며, 또는 조달가액 추산을 위한 특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양허표

5. 각 당사국은 부속서 10-가, 부속서 10-나, 부속서 10-다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다음의 정보를 명시한다.

- 가. 제1절에는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중앙정부기관
- 나. 제2절에는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지방정부기관
- 다. 제3절에는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그 밖의 모든 기관
- 라. 제4절에는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상품
- 마. 제5절에는 건설서비스를 제외한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 바. 제6절에는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건설서비스
- 사. 제7절에는 일반 주해, 그리고
- 아. 제8절에는 정보의 공표

가액산정

6. 적용대상조달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조달가액을 추산할 때, 조달기관은 다음을 고려하여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쳐 추정되는 최대 총 조달가액을 포함한다.

- 가. 세금, 관세, 물류 지원, 자금 조달 비용, 직원 및 보수율과 같이 그 계약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 할증료, 요금, 수수료,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입 흐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수

나. 선택 조항의 가액, 그리고

다. 동일한 조달에 따라 동시에 또는 주어진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 계약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활동

7.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토지, 기존 건물 또는 그 밖의 부동산, 또는 이들에 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임차

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협력협정, 무상교부, 융자, 지분참여, 보증, 보조금, 재정적 유인 및 후원 약정을 포함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다. 재무 대리 또는 예탁 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산 및 관리 서비스, 또는 융자 및 정부채권, 어음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포함한 공적 부채의 판매, 상환 및 배분과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라. 공공고용계약

마. 다음과 같이 수행되는 조달

1) 개발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지원을 제공하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 조달

2) 국제기구에 의하여 또는 외국의 또는 국제적 공여, 차관 또는 그 밖의 지원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것으로서, 국제기구 또는 공여자의 조달 절차 또는 조건이 적용되는 것, 그리고

- 3) 군대 주둔과 관련되거나 사업 서명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 협정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하에서 수행되는 것

제10.4조

예외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 조달과 관련된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하거나 그러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 조달, 또는

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에 불가결한 조달

2.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당사국들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게 되거나 당사국들 간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재소자 노동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조치

제10.5조

일반원칙

1. 당사국들은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자 무역 관계를 증진하는 데에 정부조달의 역할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당사국이 적용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부조달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을 수행한다.

내국민 대우 및 비차별

2.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각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및 서비스와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3.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과의 대외 제휴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의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국내에 설립된 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또는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하여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추가 협상

4. 이 협정의 발효 후, 당사국이 비당사국에게 자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서의 접근에 관한 이점을 제공하는 경우, 전자의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조달 방법

5. 조달기관은 제10.9조 또는 제10.10조가 적용되지 않는 한, 적용대상조달을 위하

여 공개입찰 절차를 이용한다.

전자적 수단의 이용

6. 당사국들은 조달 정보, 공고 및 입찰서류의 공표, 그리고 입찰의 접수를 위하여 적용대상조달 수행 시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7. 전자적 수단으로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는 때에, 조달기관은

가. 정보의 인증 및 암호화와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달이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나. 참가신청 및 입찰을 포함하여,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유지한다.

8. 각 당사국은 조달 계획, 공급자 선정 및 계약의 낙찰을 포함하는 조달 과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일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원산지 규정

9. 적용대상조달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자국이 이와 동시에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같은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과 다르거나 불합치하는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응구매

10.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부속서 10-가, 부속서 10-나 및 부속서 10-다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응구매를 모색, 고려, 부과 또는 시행하지 않는다.

제10.6조

조달 정보의 공표

1. 각 당사국은 정부 조달에 관한 자국의 법과 규정, 절차,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자국의 법 또는 규정으로 정한 표준 계약 조항을 공개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정보를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갱신한다.
3. 각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정보에 관련된 문의에 대한 응답으로 설명을 제공한다.

제10.7조

공고

조달예정공고

1. 각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부속서 10-가, 부속서 10-나 및 부속서 10-다에 기재된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무료인 단일 접근 창구를 통하여 적절한 종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조달예정공고를 공표한다. 공고는 최소한 공고에 응답하기 위한 기간의 만료 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2.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정보가 조달예정공고와 동시에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에게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입찰서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조달예정공고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조달 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그 조달 기관에 접촉하고 조달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그리고 관련 서류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과 지불조건이 있다면 그 비용과 지불조건

- 나. 적절한 경우,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그리고 선택 사항에 대한 기술,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하는 조달에 대한 설명
- 다. 적용 가능한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 기간 또는 계약 기간
- 라. 적용 가능한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 마. 입찰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 바.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공식 언어 외의 언어로 입찰서 또는 참가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는 경우, 하나 또는 복수의 해당 언어
- 사. 공급자가 제공해야 하는 특정 서류 또는 증명서에 대한 모든 관련 요건을 포함할 수 있는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의 목록 및 간단한 설명, 그리고
- 아. 조달기관이 제10.9조에 따라 입찰 참가를 청하는 대상으로 제한된 숫자의 적격 공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하는 데 사용될 기준과, 적용 가능한 경우, 입찰 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모든 제한

조달계획공고

- 3. 조달기관은 조달의 대상 및 조달예정공고의 공표 계획일을 포함해야 할 향후 조달 계획에 관한 공고(이하 “조달계획공고”라 한다)를 매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도록 장려된다.

제10.8조

참가조건

- 1. 조달기관은 적용대상조달의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그 조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

한 법적 및 재정적 역량과 상업적 및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한정한다.

2. 참가조건을 설정할 때, 조달기관은

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 조달의 대상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해당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조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는 이전의 관련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9조

공급자 자격심사

등록제도와 자격심사 절차

1.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관심 있는 공급자가 등록하고 특정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공급자 등록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2. 어떠한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도 자국의 조달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참가하는 것에 대하여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등록제도나 자격심사 절차를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택입찰

3. 조달기관이 선택입찰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가. 적격 공급자에게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참가 신청을 제출하도록 청하는 조

달예정공고를 공표한다. 그리고

- 나. 조달예정공고에 제10.7조제2항가호, 나호, 라호, 사호 및 아호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4. 조달기관은

- 가. 관심 있는 공급자가 조달에 대한 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달에 대한 공고를 충분히 사전에 공표한다.
- 나. 조달기관이 제10.14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통보하는 적격 공급자에게 최소한 제10.7조제2항 다호, 마호, 및 바호의 정보를 입찰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제공한다. 그리고
- 다. 조달기관이 조달예정공고에 입찰에 허용될 공급자 수의 제한 및 제한된 숫자의 공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또는 정당한 이유를 기술하지 않는 한, 모든 적격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한다.

5. 입찰서류가 제3항에 언급된 공고의 공표일부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지 않은 경우, 조달기관은 제4항다호에 따라 선정된 모든 적격 공급자에게 입찰서류가 동시에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유자격자 명부

6.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관심 있는 공급자들에게 유자격자 명부에의 등재를 신청하도록 청하는 공고를 매년 발행하거나, 달리 전자적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유자격자 명부를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그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유자격자 명부가 사용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또는 이들의 범주에 대한 설명

- 나. 유자격자 명부에 등재하기 위하여 공급자들이 충족해야 할 참가조건과 조달기관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이 공급자의 그러한 조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할 방법
- 다. 조달기관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그 조달기관에 접촉하고 유자격자 명부와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 라. 유자격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이를 갱신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유자격자 명부 사용의 종료를 통보할 방법의 적시, 그리고
- 마. 적용 가능한 경우, 유자격자 명부 등재를 위한 신청서의 제출 마감시한

7. 유자격자 명부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제6항에 언급된 공고에 규정된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공급자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명부에 포함시킨다.

8.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급자가 유자격자 명부에 근거한 조달에의 참가 신청서 및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제10.15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그 신청서를 검토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조달기관은 신청에 대한 검토를 입찰서 제출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급자를 그 조달과 관련하여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제10.10조

제한입찰

1. 조달기관이 제한입찰을 이용하는 경우, 조달의 성격에 따라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0.11조, 제10.12조, 제10.13조, 제10.14조 또는 제10.15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조달기관은 다음의 상황에서만 제한입찰을 이용할 수 있다.

가. 사전 공고, 참가 요청 또는 입찰 요청에 대하여

- 1)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거나 참가를 신청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 2) 입찰서류상 필수적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 3)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또는
- 4)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일 경우

다만, 조달기관이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필수적인 요건을 실질적으로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

나.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다음의 이유로 합리적인 대안이나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1) 요건이 예술 작품에 대한 것인 경우
- 2) 특허, 저작권 또는 그 밖의 배타적인 권리의 보호, 또는
- 3)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경우

다. 최초 조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 공급자 또는 그의 인증 받은 대리인이 추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 변경이

- 1) 최초 조달에 따라 조달된 기존의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설

비와의 상호호환성 또는 상호운용성 요건과 같은 기술적 이유로 또는 원 공급자의 보증에 따른 조건으로 인하여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2) 조달기관에 중대한 불편 또는 상당한 비용 중복을 초래할 경우

- 라. 원자재 시장 또는 거래소에서 구매되는 상품의 경우
- 마. 조달기관이 조사, 실험, 연구 또는 독자 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을 목적으로 그리고 그 계약과정에서 조달기관의 요청으로 한시적 이용을 위하여 의도되었거나 개발된 시제품 또는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시제품이나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독자 개발은 현장시험 결과를 포함하고 그 시제품이나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용할만한 품질 기준으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한적 생산이나 공급을 포함할 수 있으나, 상업성을 확립하거나 연구 및 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이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그 후의 조달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된다.
- 바.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원 입찰 서류의 목적 내에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그 서류에 기술된 건설서비스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러나 추가적인 서비스에 낙찰된 계약의 총 가액은 최초 계약의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적이며 각 당사국의 법과 법률에 따른다.
- 사. 기초 사업에 부합하는 유사한 서비스의 반복으로 구성된 신규 서비스의 경우로, 그 기초 사업의 최초 계약이 낙찰되었으며, 그 조달기관이 최초 서비스에 관한 조달예정공고에 그러한 신규 서비스의 계약 낙찰에는 제한 입찰절차가 사용될 수 있다고 적시한 경우
- 아. 이례적인 처분, 청산, 파산 또는 법정관리와 같이 매우 단기간에만 발생하

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매의 경우. 다만, 일반 공급자로부터의 통상적인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디자인 경연대회 당선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의 경우

- 1) 경연대회가 이 장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조직된 경우, 그리고
- 2) 당선자에게 디자인 계약이 낙찰되게 할 목적으로 경연대회가 독립적인 심사인단에 의하여 판정을 받는 경우

차. 엄밀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조달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극도로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에 의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에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카. 적용 가능한 기존의 법과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제한입찰의 수행이 요구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낙찰된 각 계약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조달기관의 명칭,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 및 종류, 그리고 제한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한, 제1항에 기술된 상황과 조건을 적시하는 문안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준비하거나 기록을 유지한다.

제10.11조

협상

1.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다음의 경우, 자국의 조달기관이 협상을 수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가. 조달기관이 제10.7조에 따라 요구되는 조달예정공고에서 협상을 수행할 의향이 있다고 적시한 경우

나. 평가를 통하여, 조달예정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가격 또는 그 밖의 특정 평가기준에 비추어 명백하게 가장 유리한 입찰서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경우, 그리고

다.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달기관은

가. 협상에 참가하는 공급자의 탈락이 조달예정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됨을 보장한다. 그리고

나. 협상이 타결된 경우, 나머지 참가 공급자에게 새로운 또는 개정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공통적인 마감시한을 제시한다.

제10.12조

기술 규격

1. 조달기관은 다른 당사국들 공급자의 참가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 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규정하지 않는다.

2. 조달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 규격을 규정할 때,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가.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 및 기능적 요건을 기준으로 기술규격을 규정한다. 그리고

나. 국제표준이 존재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기술 규격을 그러한 국제표준에 기초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술규정, 인정된 국가표준 또는 건축법규에 기초한다.

3. 기술규격에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이 사용되는 경우,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 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 조달의 요건을 명백하게 충족시키는 동등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입찰서를 고려할 것임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

4. 조달기관은 조달의 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명료하게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상표 또는 상호, 특허, 저작권, 디자인, 형식,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요구하거나 인용하는 기술규격을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달기관은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 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조달기관이 천연자원의 보존 또는 환경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적용 가능한 경우, 그러한 규격은 국제 표준에 기초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이 그 당사국 영역 밖에서 정부의 민감한 정보의 보관, 호스팅(hosting) 또는 처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격을 포함한 그러한 정보를 보호하는데 요구되는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제10.13조

입찰서류

1. 조달기관은 관심 있는 모든 공급자에게 그 공급자가 응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입찰서류를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거나 제공한다. 조달예정공고에 이미 규정되지 않는 한, 그러한 서류는 다음에 대한 완전한 기술을 포함한다.

가.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범위 그리고 알려진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한 그 조달 그리고 기술규격, 적합성 평가 인증, 계획서, 설계도 또는 사용설명서 자료를 포함한 충족시켜야 하는 모든 요건

나. 참가조건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재정적 보증, 정보 및 서류를 포함한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

다. 계약 낙찰시 고려될 모든 평가 기준, 그리고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기준의 상대적인 중요성

라.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을 수행할 경우, 인증 및 암호화 요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제출과 관련되는 그 밖의 요건

마. 공개 개찰이 있을 경우, 개찰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입회 권한이 있는 인물

바. 입찰 평가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조건, 그리고

사. 상품 인도 또는 서비스 공급 날짜

2. 적용 가능한 경우 요금을 조건으로, 조달 기관은 관련 입찰 서류를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 또는 컴퓨터 기반 통신망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할 것이다.

3. 조달기관은 조달될 상품의 인도 날짜 또는 서비스의 공급 날짜를 정할 때, 조달의 복잡성, 예상되는 하도급 계약의 범위, 그리고 공급지점으로부터 상품을 생산하고 실어내고 운송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요구되는 현실적인 시간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

4. 조달기관은 관심 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의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신속하게 답변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그 공급자에게 다른 공급자보다 해

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수정

5. 조달기관이 계약의 낙찰 전에 조달예정공고 또는 참가한 공급자에게 제공한 입찰서류에 규정한 평가 기준 또는 요건을 수정하거나,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개정하거나 재발행하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그러한 수정사항 또는 개정되거나 재발행된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가. 수정, 개정 또는 재발행 당시 조달에 참가 중인 모든 공급자를 조달기관이 알고 있는 경우, 그러한 모든 공급자에게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원래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표하거나 제공한다. 그리고

나. 적절한 경우 그러한 공급자가 최초 입찰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할만한 충분한 시간 내에 공표하거나 제공한다.

제10.14조

기간

일반사항

1.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입찰서류를 획득하고 참가신청서와 응찰서를 준비 및 제출할 수 있도록 자국의 합리적인 필요에 합치되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가.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

나. 예상되는 하도급 계약의 범위, 그리고

다. 전자적 수단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의 지점에서 비전자

적 수단으로 입찰서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

마감시한

2. 적용대상조달을 위한 기간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10.15조

입찰서의 취급 및 계약의 낙찰

입찰서의 취급

1. 조달기관은 모든 입찰서를 조달 과정의 공정성 및 공평성과 입찰서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접수하고 개찰하며 취급한다.
2. 공급자의 입찰서가 입찰서 접수에 대하여 명시된 시각 후에 접수된 경우, 그 조달기관은 지연이 오로지 그 조달기관 측의 잘못된 취급 때문인 경우 그 공급자를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3.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형식상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참가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계약의 낙찰

4. 입찰서가 낙찰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되고, 개찰 시 입찰서가 공고 및 입찰서류에 규정된 필수 요건을 준수하며, 참가조건을 충족시키는 공급자가 제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조달기관이 계약을 낙찰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조달기관은, 충분히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조달기관이 결정한 공급자로서

공고 및 입찰서류에 명시된 평가기준에만 근거하여 다음을 제출하는 공급자에게 계약을 낙찰한다.

가. 가장 유리한 입찰서, 또는

나.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 최저가 입찰서

6. 이 장의 조건에 합치되게, 조달 기관은 공급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일반 조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 조달기관이 제출된 그 밖의 입찰서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그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및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그 공급자와 검증할 수 있다.

제10.16조

낙찰 후 정보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1. 조달기관은 입찰서를 제출한 참가 공급자에게 그 조달기관의 계약 낙찰 결정을 서면으로 알린다.

2.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제10.17조에 따라, 조달기관은 요청 시 낙찰되지 않은 공급자에게 그 조달기관이 그 낙찰되지 않은 공급자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 또는 낙찰자의 입찰서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기록의 유지

3. 조달기관은 제10.10조에 규정된 기록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입찰 절차 및 계약의 낙찰과 관련된 서류, 기록과 보고서를 계약 낙찰 후 최소 3년 동안 유지한다.

제10.17조 정보의 공개

당사국들에 대한 정보의 제공

1. 한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달 기관에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적용 가능한 경우 낙찰에 성공한 입찰서의 특징과 상대적 이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조달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이 장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그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협의하여 서면 승인을 얻은 후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어떠한 공급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정보의 비공개

2.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법이 요구하는 한도 또는 그 정보를 제공한 공급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한 공급자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비밀정보의 공개가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국(조달기관, 당국 및 심사기구를 포함한다)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법 집행을 방해하게 될 경우

나.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다. 특정한 인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지식재산의 보호를 포함한다)을 저해하

게 될 경우, 또는

라.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될 경우

제10.18조

조달의 수행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정부 조달에서 부패를 다루기 위한 형사 또는 행정 조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 조달과 관련하여 사기 또는 그 밖의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했다고 그 당사국이 판단한 공급자들에 대하여, 무기한 또는 명시된 기간 동안 그 당사국 조달에 대한 참가 자격이 없도록 하는 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또한 조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인들의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가능한 한도에서 제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보장한다.

제10.19조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

1. 당사국들은 경제성장과 고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중요한 기여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이 중소기업을 위한 특혜 대우를 제공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적격성 기준을 포함하여 그 조치가 투명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가. 중소기업의 정의를 포함한 조달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를 단일 전자 포털에서 제공한다.

나. 모든 입찰서류가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다. 조달을 전자적 수단 또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수행한다. 그리고

라. 중소기업에 의한 하도급의 이용을 포함하여 조달의 규모, 설계 및 구조를 고려한다.

제10.20조 재정적 의무

1. 이 장은 당사국들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역할을 충족하기 위한 재정 비용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0.21조 언어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제10.6조에 따라 자료나 정보를 공표할 때, 제10.6조에 언급된 정보가 영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제10.22조 검토

제16.1조(공동위원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향후 각 당사국의 정부 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이 장을 개선하기 위하여 3년 내에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대로 이 장을 검토할 수 있다.

제10.23조

연락처

1. 정보 교환과 협력은 다음 연락처를 통하여 촉진된다.
 -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 나.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경제부, 그리고
 - 다. 바레인의 경우, 상공부
2. 각 당사국은 자국 연락처의 모든 변동 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제10.24조

협력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 각각의 정부조달 체계와 시장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고 조달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조달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가능한 한도에서, 당사국들의 법, 규정 및 절차 그리고 그 개정에 관한 정보의 교환
- 나. 이 장의 혜택이 널리 공유되도록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달의 장려
- 다. 정부조달 체계 내 전자적 수단의 사용에 대한 경험의 공유, 그리고
- 라. 잠재적 공급자 또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 간에 이 장에 대한 이해와 인

식을 높이기 위하여 연계 및 기업 간 관계를 증진

제10.25조
정부조달위원회

1. 당사국들은 당사국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정부조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2.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이 장의 이행과 운영의 검토 및 점검
 - 나. 정부조달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 논의
 - 다. 공동위원회에 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 그리고
 - 라. 제16.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위임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 수행